

의안번호	제 2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
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9월 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
번 호

25

제출연월일 : 2014년 9월 5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운용중인 조례를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 반영과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으로 농업인회관 시설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조문 정비 : 제7조제1항
-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한 사항 삭제 : 제7조제2항제3호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, 제한, 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 사용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, 제한, 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<u>사용 7일전까지</u>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.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. 기타 시설 및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	<p>제7조(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, 제한, 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<u>시설 사용전까지</u>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p><u><삭 제>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 (사용 · 수익허가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25조(사용 · 수익허가의취소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 ·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· 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사용 ·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□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(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)

- 농업인회관 시설사용에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7조 제①항, 제7조 제②항 3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 추진